

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7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9. 27.

제 출 자 : 서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지방세징수법」,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 및 「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 변경 사항 등을 반영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세징수법」 및 「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」의 인용 조문 번호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(안 제4조, 안 제10조 제1항)
- 나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

3. 개정조례안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03조의3
- 2)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 제91조의12
- 3) 「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」 제73조의8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'23. 8. 21. ~ 9. 11.
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규제심사 대상 아님
- 3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: 원안동의
- 5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- 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의결

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“법 제71조의2제1항”을 각각 “법 제103조의3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7일간”을 “7일”로, “서류제출을”을 “서류를 제출하도록”으로 한다.

2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

제6조제1항 중 “운영은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”을 “운영은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)”를 “(매각대행 해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해제요청”을 “해제 요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후단 중 “별지 제79호서식의”를 “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”으로, “인수증에”를 “인수증을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「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」 제52조의3”을 “시행규칙 제73조의8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”을 “전문매각기관”으로, “경우”를 “경우, 구청장은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제103조까지의 규정”을 “제103조까지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3호 중 “「조세범 처벌법」 위반”을 “「조세범 처벌법」 위반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항에 대하여는”를 “경우에는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협의를결과”를 “협의를 결과”로 한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전문매각기관 모집공고 등)</p> <p>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<u>법 제71조의2제1항</u>에 따른 전문매각기관(이하 “전문매각기관”이라 한다)을 모집·선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<u>법 제71조의2제1항</u>에 따른 예술품등(이하 “예술품등”이라 한다)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</p> <p>2. <u>정보통신망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)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</p>	<p>제4조(전문매각기관 모집공고 등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법 제103조의3제1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----- <u>법 제103조의3제1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 <u>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

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.

④ (생략)

제6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제5조제3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다.

② (생략)

제8조(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9조(매각재산의 인도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「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」 별

7일

서류를 제출하도록

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

운영은 「지방세기본법」

및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매각대행 해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해제 요청

제9조(매각재산의 인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(이

지 제79호서식의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록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.

③·④ (생략)

제10조(매각대금의 수령 등) ① 전문매각기관은 「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」 제52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.

제11조(매각대금 등의 배분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 -----

----- 인수증을 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매각대금의 수령 등) ① ----- 시행규칙 제73조의8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전문매각기관-----
----- 경우, 구청장은-----
-----.

제11조(매각대금 등의 배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제103조까지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)

① 구청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후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3. 체납, 「조세범 처벌법」 위반,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
② (생략)

제13조(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)

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,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

제12조(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)

①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 「조세범 처벌법」 위반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)

① -----

--- 경우에는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협의 결과-----

-----.

<삭 제>

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
한다.

[관계법령]

【지방세징수법】

제103조의3(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·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,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(이하 “예술품등”이라 한다)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(이하 “전문매각기관”이라 한다)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,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[본조신설 2022. 1. 28.]

【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】

제91조의12(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) 법 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2. 1. 28.]

【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】

제73조의8(매각대행 수수료) 법 제103조의3제3항 및 영 제91조의1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. <개정 2022. 3. 18.>

[제52조의3에서 이동 <2022. 3. 18.>]